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은 학교법인은 규정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전년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도, -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은 【붙임】 '수익용 기본재산 재산세, 교육세 법인회계 부담 현황'과 같이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ㄱ 토지 등 수익용 기본재산 72건을 관리하면서 임대수익은 약 1,500천원이 발생한 반면, 재산세 및 교육세는 30,020천원을 부담한 사실이 있음	○ **기관경고** ○ **통보** - ㄱ 등 수익용 기본재산 72건에 대하여 매각 등을 포함한 수익창출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붙임】

수익용 기본재산 재산세, 교육세 법인회계 부담 현황

“생 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	**공공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의무 미준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과 구미대학교는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공기록물을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지 않은 채 수기결재 처리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전자적 생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 구미대학교】** **○ 통보** - 생산·접수한 공공기록물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	**자료 제출 명령 거부 및 물품 임의 파기 등 부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 직원에 대해 출석·답변의 요구,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48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 구미대학교】** **○ 중징계(2명)** **○ 과태료(3명)**
	- 구미대학교는 2022. 3. 21.부터 실시한 교육부 종합감사 대응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 변조, 문서등록대장 목록 변조 및 누락, 징계위원회 회의록·직원채용 문서·연봉계약서·지원자 이력서·임용공문 등의 공문을 감사기간 중 새로이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직인 날인 한 사실이 있고, 이에 감사단장으로부터 2022. 3. 23., 2022. 3. 24., 2022. 3. 28. 세 차례에 걸쳐 신뢰성 있는 감사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음	
	- 감사단장의 요청 이후, 감사단은 구미대학교 ○○처 직원 C가 감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가 사전제출 수감자료와 불일치함*을 확인하고, 지출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허위자료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2. 3. 31. 공문으로 '○○처 물품(컴퓨터) 봉인 및 자료 반출(열람) 요구**'를 구미대학교 A에게 요구한 사실이 있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 C가 제출한 급여관련 엑셀 파일의 시트명이 각 '가라' '진실'로 기재되었고, 일부직원의 급여내역이 시트별로 상이하며, 특정 직원 연봉에 메모로 '외부로 알리는 것'이라고 기재 ** 구미대학교는 여타의 대학과는 달리 지출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담당자가 PC의 파일을 관리하고 수기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PC 확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 구미대학교 A는 2022. 3. 31. 총장실을 방문한 교육부 감사단이 위 '○○ 물품(컴퓨터) 봉인 및 자료 반출(열람) 요구' 공문을 전달하자, 화장실 이용을 이유로 총장실 내부 부속실로 이동한 후 T(BQ의 子)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단이 C 선생의 컴퓨터를 가지고 간다"고 전하고***, 이후 현장이탈 및 휴대폰 전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단의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있음 *** 총장의 전화를 받은 T은 ○○처 C 직원의 PC에서 불상의 자료를 외장하드로 반출을 시도하였으나 동 시점에 감사단이 현장에 도착하여 이를 지적하였고, 직원 C는 "이건 안돼요"라고 외치며 PC에 연결중이던 외장하드를 뽑아 □□처 직원자리로 투척. C는 해당 외장하드를 다시 주워 □□처장실로 이동한 뒤, 제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다 현장 이탈 - 또한, A는 2022. 4. 1. 3층 감사장에서 교육부 감사단으로부터 재차 위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면담 도중 '자료 제출 못하겠습니다'라는 발언 후 감사장을 이탈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에 불응한 사실이 있음 - 한편,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 B는 2022. 4. 1.과 2022. 4. 4. 교육부장관 명의로 2차례 자료제출 명령을 받았음에도, 건강상의 이유 및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에 불응하다가, 2022. 4. 7. 감사자와의 문답에서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거부 사유에 대하여는 묵비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 구미대학교 C는 감사 이후인 2022. 5. 18. 교육부가 회계비리 의혹의 확인을 위해 관련 PC 2대 및 외장하드 1기를 수납해 둔 캐비닛의 봉인을 훼손하고, 봉인 중이던 외장하드 1개 및 PC 1대에 탑재된 SSD 1기와 하드디스크 1기를 임의로 반출한 사실이 있음 - 또한, C는 봉인을 훼손하여 임의반출한 SSD 1기, 하드디스크 1기, 외장하드 1기 등 3개와 SSD 및 하드디스크 각 1기(교육부 감사단이 봉인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봉인된 PC의 자료 백업 제공)를 드라이버로 물리적 훼손한 후, 부산으로 이동하는 중 부서진 SSD 2기는 KTX열차 화장실에, 하드디스크 2기는 부산 바다에, 외장하드 1기는 OOO역 쓰레기장에 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 이에 따라 교육부 감사단은 관련 회계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있음 ※ C는 물품폐기의 동기로 해당 저장매체에 사적인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 감사관이 이를 확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 진술하였으나, 담당감사관은 감사 당시 저장매체 열람 과정에서 여성이 동석하여 사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확인하지 않을 것임을 수차례 고지한 바 있음	

【참고】

자료 제출 명령 관련 경과

"생 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	**감사자료 제출의무 위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1조 및「교육부 감사규정」 제9조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해 필요할 때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해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사립학교법」 제48조 및 제72조의4에 따르면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구미대학교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 수감자료를 제출하면서 아래【표1】"교직원 범죄사실 미제출 현황"과 같이 ▶▶과 조교수 W 등 3명에 대한 범죄사실을 검·경으로부터 통보받고도 감사자료는 "해당 없음"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고,	○ **경징계(1명)** ○ **경고(1명)** ○ **통보(문책 1명)** ○ **통보** - 검찰 및 경찰로부터 범죄사실이 통보된 교직원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표 1】 교직원 범죄사실 미제출 현황

범죄사실 통보일	통보기관	대상자			범죄내용
		소속	직	성명	
2021-5-7	-------경찰서	▶▶과	조교수	W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위반(치상)
2021-5-30	---------경찰서	□□	9급	BB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2021-9-28	---------검찰청 --지청	◘◘과	조교수	Y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나아가, ○○처 과장 D는 2022. 3. 23. 문서등록대장을 제출하면서 아래【표 2】“문서등록대장 제목 변경 감사자료 제출현황”과 같이 2021. 5. 29, 5. 30. ----경찰서에서 통보된 ‘공무원 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교통과-00026)’ 및 ‘공무원 등 범죄 수사상황 통보(교통과-00027)’ 문서 제목을 ‘성범죄 경력 조회 의뢰’ 및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으로 문서등록대장 공문 제목을 실제와 다른 제목으로 변경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처 과장 D 2022. 3. 21. 교직원 징계와 검·경 통보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이미 진술한 바가 있어, □□ 9급 BB의 음주운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 문서등록대장을 변경한 것이라 진술함

【표 2】 문서등록대장 제목 변경 감사자료 제출현황

실제					변경		
시행일	수신자 (발신자)	생산기관 등록번호	문서제목	범죄혐의 교직원	수신자 (발신자)	생산기관 등록번호	문서제목
2021-5-29	---- 경찰서	-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	□□ BB (음주운전)	-- 경찰서	-	성범죄 경력 조회 의뢰
2021-5-30	---- 경찰서	-	공무원 등 범죄 수사 상황 통보	□□ BB (음주운전)	-- 경찰서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5	**기록물 평가·폐기 부적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르면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 포함)하여야 하고, 「구미대학교 문서관리규정」 제4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는 대학의 기록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교육부 및 국가기록원 「2018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교육부)」에 따르면 시험관리 업무의 경우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안내(시험관리 10년, 단과대학시험관리 5년)하고 있는데도,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부적정】** - 구미대학교는 대학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2021. 8. 4.)하면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평가위원 중 민간 전문가 인원 및 위촉 적절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위촉 관련 문서를 생산하지 않고,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도 생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기관경고** ○ **통보** -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 기록물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성적평가 관련 기록물 폐기 부적정】 - 구미대학교 ㄱㄴ처는「구미대학교 문서관리규정」제37조 제1항 제7호에 영구·준영구적으로 보존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학사 및 성적에 관한 문서는 보존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학과별 시험답안지 및 출석부 등 성적 평가 자료의 보존기간을 1년으로 책정하고,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21. 8. 4., ○○처 주관) 절차에 따라 성적 평가 자료에 대한 처리과 의견을 '폐기'로 하였고, 심의 결과【붙임】'성적평가 관련 기록물 폐기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총 224권의 성적 평가 자료를 폐기('21. 8. 17.)한 사실이 있음	

【붙임】

성적평가 관련 기록물 폐기 현황

"생 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6	**비전임교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보존**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42조는 근로계약서를 보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 및 제116조제2항제2호는 동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법 제42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도, - 구미대학교는 ■■과 초빙교원 BC를 임용하였음에도 임용자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현존하지 않는 등【붙임】 '근로계약서 미현존 교직원 명단'과 같이 위 BC 등 7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기관경고** ○ **통보** - 근로계약서가 현존하지 않는 교직원 현황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

【붙임】

근로계약서 미현존 교직원 명단

"생 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7	**교직원 특별상여금(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구미대학교 직원 연봉계약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르면 직원은 대학에 대한 기여도 및 근무실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차등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세부 사항은 교원 특별상여금 지급 규정을 준용함), 「구미대학교 교원 특별상여금 지급 규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특별상여금은 공로상여금, 모범상여금, 성과상여금으로 구분하고, 성과상여금은 산학활동, 학사관리활동, 취업활동 등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지급대상자 선정 후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 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 2020학년도 교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 E는 A, T에게 보고하여 직원 38명, 교원 40명의 대학 기여도 및 개인별 성과상여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이에 맞추어 ○○처 직원이 성과측정결과표(직무능력, 업무성과, 대인관계, 근무태도)를 사후에 임의 작성 및 부서장 서명을 받아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성과상여금 합계 232,208,826원을 【붙임】 '2020년 특별상여금(성과상여금) 부적정 지급 현황'과 같이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경고(5명)** ○ **통보** - 특별상여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 성과측정 결과에 따라 지급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 담당직원 AC는 E의 지시를 받아 교직원 특별상여금 지급 금액에 대해 평가표 임의 기재 및 각 부서장 서명으로 지급하였음을 감사 기간 중 진술('22. 3. 25.) ※ 교직원 특별상여금 지급 시기 : 당해연도 특별상여금에 대해 익년도 5월경에 지급함. 이에 따라 감사 시점(22. 3.~4.) 기준으로 '21년 성과급 미지급	

【붙임】

2020년 특별상여금(성과상여금) 부적정 지급 현황

"생 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8	**채용기준 미충족자 교원 임용** ○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 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구미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기준 변경(○○, 2016. 00. 00.)」에 따르면 합격자 결정은 1차 전형(기초심사, 전공심사)의 성적, 2차 전형(면접)의 성적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하고, 1차 전형(70점), 2차 전형(30점)의 성적이 해당 배점의 40% 미만(과락)인 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미대학교 교원초빙 공고(2021. 3. 10.)」에 따르면 ◎◎과(◎◎/☆☆) 자격요건을 ◎◎ 박사수료 이상, ◎◎ 주제의 박사 학위 소지자, ◎◎학 석사(교사자격 소지) 학위 소지자로 대학 강의경력 1년 이상 또는 유치원 경력 5년 이상자로 되어 있고, 「취업특성화대학 구미대학교 교수초빙 공고(2013.12.12.)」에 따르면 연구실적물 20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면접전형 심사점수 과락자 신규임용】**……① - 구미대학교는 2020. 1학기 ♨♨부(♩전공) 전임교원 채용을 위한 2차 면접전형 결과, 지원자 BD의 심사점수가 11.33점으로 해당 배점(30점)의 40% 미만으로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임용 제청하여 채용하는 등 【붙임】 "면접전형 심사점수 과락자 임용현황"과 같이	【①, ② 관련】 ㅇ **경고(3명)** ㅇ **통보** - 향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원 채용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공고 등을 준수하기 바람 **【 ② 관련】** ㅇ **경고(2명)**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020.1학기부터 2021.1학기까지 전임교원 채용 면접 전형 결과 해당 배점의 40% 미만으로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해야 하는 위 BD 등 2명을 임용 제청하여 채용한 사실이 있음

【실적·자격 미충족자 신규임용】……②

- 구미대학교는 2021.1학기 ◎◎과 ◎◎학/☆☆ 전공 전임교원을 충원하면서 전공이 일치하지 않고 자격요건인 교원 자격과 유치원 근무경력이 없는 지원자 BE(♪♪전공)을 2단계 면접대상자로 선발하여 최종 임용한 사실이 있고,

<참고> 2021.1학기 ◎◎과 교원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

학과 (전공)	채용 인원	지원자		단계별 심사 결과			
		성명	전공	1단계 (기초/전공심사)		2단계 (면접)	최종 임용
◎◎과 (◎◎학/☆☆)	2	AL	◎◎학	48.00	O	12.67	O
		BE	**♪♪전공**	**32.50**	**O**	**15.67**	**O**
		BF	◎◎	42.00	O	4.67	

※ 합격자 결정 : 1차 전형(기초심사, 전공심사) 성적, 2차 전형(면접) 성적에 대해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1차 전형(70점), 2차 전형(30점)의 성적이 해당 배점의 40% 미만(1차 전형: 28점, 2차 전형: 12점)인 경우에는 과락으로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

- 또한, 2014.1학기 ◎◎과(⊠⊠교육) 전임교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공고(연구실적물 200% 이상)와 다르게 연구실적이 없는 지원자 W을 조교수로 임용한 사실이 있음

【붙임】

면접전형 심사점수 과락자 임용현황

"생 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9	**교원징계 미조치 및 절차 중단** ○「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제53조의2에 따르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교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며,「같은 법」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6조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 여부 등을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 **○ 기관경고** **○ 통보** -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원 징계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람 **【구미대학교】** **○ 경고(1명)** **○ 통보(문책 1명)**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은 2018. 7. 4. ▷▷과 조교수 U가 음주운전으로 기물파손* 후 도주한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서도 2022. 4. 감사일 현재까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2018. 7. 2. 산업체위탁교육 사업체인 ∀∀로부터 관련 사실(주차차단기 파손 후 도주) 및 관련자 엄정 조치 요청을 받음 ※ 2018. 7. 13. 교원징계위원회는 U 출석진술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의결하고서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고, 교원징계위원장은 자신의 판단으로 징계위원회 진행을 임의 중단하였다고 인정(진술) - 2018. 11. 12. '수업 및 근무태도 불량 등' 사유로 ◎◎과 조교수 AL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 징계(견책) 의결을 요구하고서도 2018. 11. 14. 위 AL가 육아 휴직원을 제출하자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2018. 11. 30. 학교장 제청 및 이사회 의결 등 관련 절차 없이 위 AL를 의원면직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 의원면직 이후 위 AL는 2021. 4. 1. ◎◎과 신규임용 ※ 교원징계위원장은 자신의 판단으로 징계위원회 진행을 임의 중단하고 사후 보고하였다고 인정(진술) - 또한, B는 2015. 3. 10. '업무태만 및 무단결근 등' 사유로 ♪과 조교수 AR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2015.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 16.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해임)를 통보받고, 2015. 4. 14. 2015학년도 제2차 이사회 '해임' 안건을 상정하여 참석이사 전원(AM, AO, A, AP, AQ)이 '해임' 의결하였는데도 '징계처분을 유보하고 의원면직하는 것'으로 재차 의견을 개진하여 징계처분 없이 2015. 4. 16. 위 AR을 의원면직 처리하였고, - 아울러,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은 ◎◎과 AL, ♪과 AR의 의원면직 신청 시에 의원면직 제한대상여부 등을 교육부 등에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0	**채용절차 · 복무관리 및 교비회계 관리 부당 등**	
	○「구미대학교 직원인사 규정」 제2조, 제5조, 제6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 제35조 및 제50조에 따르면 직원은 이 규정 및 대학의 제 규정과 업무상의 정당한 지시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업무시간 중 허가 없이 업무지를 이탈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등 태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원은 지정된 출근 시간에 ○○ 총무 부서로 출근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업무시간 중 조퇴, 외출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퇴근은 부서장의 확인하에 정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직원이 근무시간 중 근무 장소를 이탈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직원은 이 규정 및 대학의 제규정과 업무상의 정당한 지시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은 이력서 등 대학이 정하는 채용기초 자료를 제출하여 소정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채용되고, 직원은 1주간(월-금)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에 대한 연봉계약은 기간, 임금, 복무조건, 기타 사항을 포함하여 1년 단위로 총장과의 개별계약에 의하며,「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및「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구미대학교 ○○처 8급 AD(B의 외조카)는 “학교기업(ㅇㅇ, 현 ㅎㅎ) 관련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2014. 5.경부터 2022. 4. 감사일 현재까지 근무 시간에 대한 조정·확인 없이 임의 시간	○ **경징계(3명)** ○ **통보(문책 1명)**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대에 출·퇴근한 사실이 있고, ※ 구미대학교는 AD가 임의 시간대에 출·퇴근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한편, 구미대학교는 2014. 8.경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권한이 없는 위 AD가 "ㅇㅇ"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BG(B의 동생, AD의 '母')를 채용 절차, 계약서 작성 등 객관적 임용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일하게 하였는데도, BG에게 2014. 8월 급여 1,921,720원[☏☏은행, BG 계좌(**********)로 실제 입금한 금액]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등 【붙임】"임용 근거 없는 노무자 급여 지급현황"과 같이 2014. 8.부터 2016. 12.까지 채용 권한이 없는 위 AD가 채용 절차, 계약서 작성 등 객관적 임용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일하게 한 위 BG에게 급여 합계 55,680,21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참고) AD는 감사 기간 중 ㅇㅇ에서 BG의 근로 사실이 있었음을 진술하였고, E(당시 ○○처장)은 BG가 카페 일을 보조하였음을 추가 문답 과정에서 진술	

【붙임】

임용 근거 없는 노무자 급여 지급현황

"생 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1	**급여 등 제3자 부당 지급**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르면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고 되어 있고, 「구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8조, 제22조 및 제50조에 따르면 '직원'이라 함은 학교법인 정관 제78조 및 이 규정 제2장에 의해 채용된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및 계약직, 전담자(전담인력) 등을 말하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고, 직원은 이 규정 및 대학의 제규정과 업무상의 정당한 지시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은 이력서 등 대학이 정하는 채용기초 자료를 제출하여 소정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임용되고, 직원은 1주간(월-금)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지정된 출근 시간에 ○○소속 ♧♧부서로 출근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직원에 대한 연봉계약은 기간, 임금, 복무조건, 기타 사항을 포함하여 1년 단위로 총장과의 개별 계약에 의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 및 구미대학교는 2015. 3. 20. '교직원 3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업무분장, 근무 기록 및 서류 기안 등 대학에서 실제 근무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AS(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 이사, '15. 2. 27. 사임)에게 급여 등으로 3,645,510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급여 등 부당	ㅇ **중징계(1명)** ㅇ **경징계(4명)** ㅇ **통보(문책 2명)** ㅇ **시정** - AS에게 지급한 급여 등 합계256,992,960원 중 근무 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되지 않는 부분의 급여액을 산정하여 관련자로 부터 환수 및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지급현황"과 같이 2015. 3.부터 2021. 2.까지 대학에서 실제 근무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위 AS에게 급여 등으로 합계 256,992,96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한편, E와 D는 감사 기간 중인 2022. 3. 27경. 실제 대학에 근무하지 않은 위 AS을 2015. 3. 1. 정상적으로 채용한 것처럼 임용서류를 만들기 위해 퇴직한 직원의 서명(2015년 당시 인사담당자 O 및 R)을 도용하고, 총장 사용 도장(법인회계 출금전표용 이사장 도장과 비슷한 원형의 총장 사용 인장, ○○처 G가 보관)을 이사장 결재란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직원 신규채용(2015. 2. 25.)' 문서 및 '15~'16년 채용계약서 등을 급조한 사실이 있음	

【붙임】

급여 등 부당 지급현황

"생 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2	**특임교수 채용 및 급여 지급 부적정** ○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 등) 제2항에 따르면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 제1항·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고 되어있고, 「같은법」 제14조의2(강사) 제1항에 따르면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의11(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 심사위원회 구성(이때 심사위원회의 위원 임명·위촉방법, 심사 방법,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해야 함),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구미대학교 기타비전임교원 임용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특임교수는	○ **경징계(3명)** ○ **통보(문책 1명)** ○ **통보** - 향후 특임교원은 관련 법에 따라 채용하는 등 해당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시정** - 학생을 지도하지 않은 AL에게 지급한 합계 58,300천 원을 관련자(A 등 집행담당자)로부터 회수하여 교비에 세입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대학과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특수한 전문경험을 갖고 퇴직하여 우리대학에서 강의 또는 대학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임용된 교수로 되어 있는데도, - 구미대학교는 2019. 4. 19. AU를 특임교수 임용시 상기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자격기준 충족여부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하는 등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채용하지 않고 A의 지시로 AU가 제출한 이력서만으로 채용을 결정했고, - 임용 문서인 「구미대 기타비전임 교원 특별임용[○○-000(2019.00.00. 총장결재본)]」에는 AU가 ∵∵을 감독한다고 되어있으나, · 위 AU가 임용된 10개월 동안(2019.5.1.~2020.4.30.) ∵∵ 훈련 및 지도를 단 한 차례도 한 사실이 없고, · ○○처(인사·복무, 급여 담당부서)는 동 위 AU가 동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확인 없이 상기 기간 동안 매월 583만 원씩 총 10개월 간 총 5,83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3	**교비 집행 기부금, 총장 개인 소득세 공제로 부당 신고** ○ 「사립학교법」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제72조의4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학교법인과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 정관」 제93조에 따르면 제92조(청렴의무)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사립학교법」 제72조5에서 정하는 사항(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등 사항 불가)을 포함하여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국세청, '19.12)」에 따르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인데도, - 구미대학교 A는 구미대학교가 2021. 7. 5. ㅍ후원 목적으로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100만 원을 2021년 연말정산 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신고로 하는 등 【붙임】 "교비 집행 기부금, A 개인 소득공제로 부당 신고 현황"과 같이 2019. 10.부터 2021. 12.까지 구미대학교가 ㅍ과 ㅎ센터 후원 목적으로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합계 500만 원을 본인이 기부한 것처럼 부당 소득 신고하였는데 담당자 C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국세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음	○ 경징계(1명) ○ 경고(1명)

【붙임】

교비 집행 기부금, A 개인 소득 공제로 부당 신고 현황

" 생 략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4	**여비 집행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구미대학교 교직원 여비 규정」 제1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교직원이 공무로 인하여 출장이나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 여행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구미대학교는 T가 2019. 3. 13. '대학업무 관련 협의' 목적으로 당일 출장을 ○○소속에서 임의로 늘려(1박2일) 여비를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붙임】 " T 여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 3. 부터 2022. 3. 감사일 현재까지 위 T가 실시한 총 56회 당일 출장을 실제보다 추가하는 방식으로 부풀려 증빙서류 없이 합계 12,510,400원(정당지급액 6,350,400)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경징계(1명)** ○ **통보(문책1명)** ○ **시정** - 부당하게 수령(추가지급)한 T 출장 여비 합계 6,160,000원을 T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 세입조치 하기 바람

【붙임】

T 여비 집행 현황

" 생 략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5	**A · T 업무추진비 정산 업무처리 부적정 등**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학교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 및 제17조 관련 【별표1】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는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이며,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사립대학정책과-645, 2017.1.17.)」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지출은 내부품의 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 구미대학교는 A가 2019. 10. 9. 내부품의(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 및 객관적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없이 법인카드로 82,000원을 결제하는 등 카드회사에서 발송한 고지서(2019.3.)만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붙임】 “객관적 입증 서류 없는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과 같이 2019. 10.부터 2022. 3. 감사일 현재까지 위 A 등 2명이 총 18회, 합계 1,238,83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음에도 매월 카드회사에서 발송한 고지서만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업무추진비 전액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기관주의** ○ **통보** - 증빙 없이 지출된 1,298,830원에 대해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교비 세입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임】

객관적 입증 서류 없는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 생 략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6	**등록금회계 이월금 관리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32조의4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립전문대학(법인) 기본재산 및 회계관리 안내(2017.4.17.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의 붙임 '사립전문대학(법인)회계 관리 안내서' 및 「사립대학(법인) 예결산 작성 유의사항(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따르면 '사립대학 이월금 처리기준'에서 연도별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의 적정 규모에 대해 등록금회계 수입총액 대비 기타이월금의 비율은 '18년 이후 1.0% 이내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이월은 이월금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기타자금(불용액, 예산절감, 사업취소 등)으로 되어 있는데도, - 구미대학교는 2019회계연도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은 312,557천원으로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 한도(307,447원) 보다 5,110천원을 초과하여 이월하는 등 【붙임】 "기타이월금 한도 초과 현황"과 같이 2019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 한도 보다 적게는 1,517천원 많게는 5,110천원을 초과하여 이월한 사실이 있음	ㅇ **기관경고** ㅇ **통보** -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붙임】

기타이월금 한도 초과 현황

" 생 략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7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초과 집행**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하며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13조에 따르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고,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구미대학교는 2019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2019.11.22.)전인 2019. 7. 12. 교비회계(등록금회계) 실험실습비 계정과목에서 '♪과 실습소모품' 명목으로 당초 예산(110,000천원) 대비 67,413천원을 초과하여 집행(177,413천원)하는 등【붙임】"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초과 집행 현황"과 같이 2019회계연도부터 2021회계연도까지 총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중 위 실험실습비 계정과목 등 9개 계정과목에서 당초 예산 대비 적게는 3,478천원, 많게는 88,767천원 합계 386,443천원을 초과 집행하였고, · 아울러, 위 초과 집행 사유는 예산 과부족에 따른 전용으로 2019학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외 나머지 3차례는 예산전용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기관주의** ㅇ **주의(1명)**

【붙임】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초과 집행 현황

"생 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8	**홍보비 집행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17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한국사학진흥재단, '19.11.)」에 따르면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홍보비'는 신문공고, 홍보용 책자, 기념품 등의 홍보용품 제작 경비에 지출하는 비용이고, '여비교통비'는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를 처리하는 계정과목인데도, - 구미대학교는 2019회계연도에서 고교 홍보 출장비를 '홍보비' 계정과목에서 1,936건 146,855,750원을 집행하는 등【붙임】"홍보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회계연도부터 2021회계연도까지 여비 총 6,145건, 합계 517,276,720원을 홍보비로 오집행한 사실이 있음	ㅇ **기관경고**

【붙임】

홍보비 집행 부적정 현황

"생 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9	**교비 수입(제증명 및 시설사용료 등) 미세입 후 무단 사용**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6조 및 제11조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8조(업무지시) 및 제19조(솔선수범)에 따르면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업무상 명령, 지시를 할 수 있고, 소속 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을 친절히 지도·감독함과 동시에 직무수행에 있어서 솔선수범 하여야 하는데도, - 구미대학교 G는 학교 통장 2개(은행 2계좌)를 통해 제증명 수수료 및 학교 시설 사용료 일부를 징수한 후, 행사·경조사·민원 처리 등 학교를 위한 대외 업무처리 명목으로 1회당 최소 10,234원에서 최대 4,215,000원을 무단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붙임】 "교비 예산 미세입 후 무단 사용 현황"과 같이 2014. 6. 10.부터 2019. 5. 23.까지 총 건수 43회, 합계 24,937,427원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혼자서 관리하면서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 또한, G를 지도·감독해야할 위치에 있는 상급자 E는 상기와 같이 장기간 교비가 무단인출되어 용도불명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관련 업무에 대해 한 차례도 지도, 감독한 사실이 없음.	○ **통보(문책 1명)** ○ **경고(1명)** ○ **시정** - 교비관련 세입액을 무단으로 인출해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금24,937,420원을 G로부터 회수해 관련 회계에 세입하고, 동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자금집행 내부통제 관리시스템 등 미련하기 바람

【붙임】

교비 예산 미세입 후 무단 사용 현황

"생 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0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부적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에 따르면 대학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별도의 정원으로 입학시킬 수 있고,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 사항('20학년도~'22학년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구미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20학년도~'22학년도)」에 따르면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지원자는 3년 이상의 산업체 경력이 있는 재직자로 하며, 「구미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20학년도~'22학년도)」에 따르면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지원자는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재직증명서', '공적증명서(4대 보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전형기간 내 입학전형 관련 서류 미제출자는 지원 자격 결격으로 합격 사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 구미대학교 입학처는 2022학년도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과(야간)에 지원한 BA(수험번호:-------)가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미만임에도 합격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위 BA는 감사기간('22.3.~4.) 중에 제출한 공적증명서 확인 결과, **산업체 경력은 1개월28일**이었고, 구미대의 답변서('24.12.13.)에서 재직증명서(**산업체 경력 2년9개월12일**)를 추가 제출 **(총 2년11개월9일)** - 또한, 2020학년도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학부(야간)에 지원한 자(수험번호:-------)가 입학전형 관련 서류 중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합격 사정없이 합격 처리하는 등 【붙임】 "특성화고	ㅇ **경고(2명)** ㅇ **통보** - 특성화고 등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의 입학서류를 추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지원서류 미제출 현황"과 같이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에서 20명이 입학전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합격 사정없이 합격 처리한 사실이 있음

※ 2020~2022학년도 특성화고 등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 결과, 총 9개 학과 중 8개 학과의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이 미달하였고(2021학년도 ▶▶과(야간) 1개 학과는 모집인원 보다 지원인원이 1명 많았으나, 등록 포기) 해당 특별전형 입학결과에서 불이익이 발생한 학생은 없음

《참고》 2020~2022학년도 특성화고 등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 결과

학년도	학과	모집인원(명)	입학인원(명)	지원인원(명)
2020	☎☎학부(야간)	15	2	3
	▶▶과(야간)	25	12	15
	▷▷과(야간)	10	1	2
	■■과(야간)	10	1	1
2021	▶▶과(야간)	25	25	26
	■■과(야간)	24	3	4
2022	☎☎학부(야간)	15	5	7
	▶▶과(야간)	33	18	22
	☜☜과(야간)	10	2	5

※ 관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집계 자료

【붙임】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지원서류 미제출 현황

“생 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1	**전문대학 입학전형 업무 회피 및 검증 부적정** **【입학전형 업무 회피에 관한 사항】…… ①** ○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학생 선발은 일반 및 특별전형으로 각 전형별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 사항('20학년도~'22학년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 및 친인척이 해당 입학전형에 지원한 경우 회피·제척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대학 입학전형 회피·제척(배제) 가이드라인('20학년도~'22학년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구미대학교 대학입학전형 회피·제척 운영규정('20. 10.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대학의 모든 입학전형에 관련하는 내·외부 구성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 및 친족이 지원한 경우 자진 회피신고서를 작성하여 △△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직원, 조교 등 내부구성원과 면접고사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외부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입학전형 대학별 고사 준비 및 진행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 - 구미대학교 ●●과 교수 Q은 2022학년도 ☞(수시1차)에 자녀(수험번호: -------)가 지원하였음에도 자진 회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참고)** 위 교수 Q은 2022학년도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과' 면접 평가위원으로 참여	**【① 관련】** ○ **경고(1명)** **【② 관련】** ○ **주의(2명)**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입학전형 업무 회피·제척 대상 검증에 관한 사항】…… ② ○ 「전문대학 입학전형 회피·제척 가이드라인(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입학지원실-2734, '20. 6. 18.)」에 따르면 대학은 반드시 입학전형 실시 전 자체적으로 회피·제척 절차 및 시스템 등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하며, 「구미대학교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운영규정('20. 10. 1.)」 제6조 및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입학처장은 평가대상자(구미대학교 입학전형 지원자) 확정 이후 시스템 검증(연말정산자료, 인사현황자료 등)을 통해 제척 대상자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학입학전형 종료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자료, 인사현황자료, 가족수당 신청내역 등 시스템 검증을 진행하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검증을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 구미대학교 △△처는 2021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평가대상자(구미대학교 입학전형 지원자) 확정 이후 시스템 검증(연말정산 자료, 인사현황자료, 가족장학사항 등)을 통한 제척 대상자 확인과 대학 입학전형 종료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검증 및 최종 검증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2	**입학전형 공정성 확보방안 미수립 및 면접평가 부적정**	
	○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학생선발은 일반 및 특별전형으로 각 전형별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 사항('20학년도~'22학년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으로 부정방지 대책 및 입시 윤리규정 등을 포함한 '공정성 확보방안'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구미대학교 입학처는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입학전형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정방지 대책 및 입시 윤리규정 등을 포함하는 '공정성 확보방안'을 수립·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구미대학교 ▷▷과 교수 U은 2019.10.8. 학과 협의*를 통하여 2020학년도 수시1차 ▷▷과 입학전형 면접 평가위원에 N, U 교수가 선정되었음에도, 2019. 10. 11. 수시1차 지원자 AX(수험번호: -------)에 대한 N 교수 면접 평가표에 본인(U)이 직접 면접 평가하고도 N 교수가 평가한 것처럼 평가표를 작성하는 등 【붙임】 "2020학년도 ▷▷과 입학전형 면접 평가 부적정 현황"과 같이 ▷▷과 교수 U 등 3명(U, AE, AW)은 학과 협의를 통해 선정된 전형별 면접 평가위원(N, F, U)이 아니면서도 2020학년도 수시1차, 수시2차, 정시전형 ▷▷과 지원자	○ **경징계(5명)** ○ **주의(2명)** ○ **통보** - 향후 입학전형 시 부정방지 대책 및 입시 윤리규정을 포함한 '공정성 확보방안'을 수립·운영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3명에 대하여 본인들(U, AE, AW)이 직접 면접 평가하고 학과 협의를 통해 선정된 평가위원(N, F, U)이 평가한 것처럼 면접 평가표를 작성하였으며, ▷▷과 학과장인 N은 면접평가 결과에 대하여 학과 협의를 통해 선정된 면접 평가위원(N, F, U)이 평가한 것처럼 "구미대학교 교직원 시스템"에 입력하고 입학처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 2019.10.8. ▷▷과 교수회의(참석자: N, U, F, AE, AW, BH)를 통하여 2020학년도 수시1차, 수시2차, 정시 전형에 대한 면접 평가위원을 선정하였는데, 구미대학교는 학부(과) 자체적으로 입학전형 면접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면접관 현황 및 면접 점수를 입학처에 제출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2020학년도 ▷▷과 입학전형 면접평가위원 선정현황 구분 / 면접관1 / 면접관2 / 비고 수시 1차 / N / U / 수시 2차 / F / U / 정시 / N / U /	

【붙임】

2020학년도 ▷▷과 입학전형 면접 평가 부적정 현황

“생 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3	**계약학과 학사 운영 부적정**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제9조 제7항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은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산업체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은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구미대학교 ♡♡는 계약학과 ▥▥과에 재학 중인 학생 AY(학번: -------)에 대하여 2019학년도 2학기부터 2020학년도 2학기 개시 전월까지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통한 산업체 재직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붙임1】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 산업체 재직 여부 미확인 현황"과 같이 2019학년도 2학기부터 2022학년도 1학기 개시 전월까지 위 AY 등 47명에 대하여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통한 산업체 재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또한, 2019학년도 1학기 종료 후 계약학과 ▥▥과에 재학 중인 학생 AY(학번: -------)의 학사 관련 정보(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업성취 등)를 재직 중인 ㅂㅂ지점에 통보하지 않는 등 【붙임2】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사관련 정보 산업체 미통보 현황"과 같이 2019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1학기까지 위 AY 등 재학생 86명(연도·학기별 중복포함)에 대한 학사 관련 정보를 매학기 종료 후 재직 중인 ㅂㅂ지점 등 34개 산업체(연도·학기별 중복포함)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경고(2명)** ○ **통보** - 계약학과 학생의 산업체 재직 현황을 추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

【붙임1】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 산업체 재직 여부 미확인 현황

"생 략"

【붙임2】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사관련 정보 산업체 미통보 현황

"생 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4	**성적평가 부당 등**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모든 교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구미대학교 교원복무규정」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교원은 관계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미대학교 학칙」 제27조 제1항 및 「구미대학교 학사업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36조1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학업성적은 각 교과 과목을 100점을 만점으로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하되, 출석성적 20~50%, 실기·과제물·수업 열의 등은 0~50%, 시험성적 20~80%로 점수를 배정하며, 교과목에 대한 성적평가는 수강생의 학습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주·객관식 시험, 과제 및 실험·실습·실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수강생 선택 또는 교수 지정)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강좌의 교수는 복수평가제 실시에 따른 성적평가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시행세칙」 제36조 2 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시험 종료 2일 이내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시험 신청서를 ㄱ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ㄱㄴ처장은 추가시험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의 동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과목당 당해학기 수업료의 1/100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부과하고 시험을 허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①, ② 관련】** **○ 중징계(1명)** **【① 관련】** **○ 경징계(1명)**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성적평가 부당】 ……① - 구미대학교 ■■과 조교수 S는 2020. 6. 22. 2020학년도 1학기 야간반 '씨' 과목에 대한 학생의 성적평가를 하면서, 기말시험 객관식 4번 문제에 학생(학번: ----------)이 오답을 기재하였음에도 학생의 학습태도나 학습 이해도, 토론 참여도 등을 가점요인으로 판단하여 임의로 정답으로 채점하는 등 【붙임1】 "■■과 조교수 S 담당 교과목 필기시험 평가 부당 현황"과 같이 2020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까지 위 '씨' 등 3개 과목, 총 141명(중간·기말 중복 포함), 98개 문항에서 학생의 학습태도나 학습 이해도, 토론 참여도 등을 가점요인으로 판단하여 임의로 정답을 오답으로 채점하거나, 시험지 지연 제출 또는 시험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경우 감점요인으로 판단하여 임의로 정답을 오답으로 채점한 사실이 있고, - ◙◙과 교수 Y는 2020학년도 1학기 1학년 기말고사 'ㅉ' 과목 10번 주관식 문제에서는 학생(학번: ------) 등 24명이 동일(단어, 문장 등)하게 답안을 제출하였음에도 14명은 감점 없이 만점을, 8명에게는 감점으로 채점 하는 등 【붙임2】 '◙◙과 교수 Y 담당 교과목 필기시험 평가 부당 현황(주관식)"과 같이 2020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까지 위 'ㅉ' 등 6개 과목 7개 주관식 문제에서 160명이 동일(단어, 문장 등)하게 답안을 제출하였음에도 110명은 감점 없이 만점으로 채점하고 50명에게는 감점으로 채점한 사실이 있으며, 2020학년도 1학기 1학년 기말고사 'ㅏ학' 과목 2번 객관식(4지 선다형) 문제에서 학생(학번:--------)이 정답 4번을 제출하였음에도 오답으로 채점하여, 위 BJ의 정당한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점수 35점을 30점으로 평가하고 2020학년도 1학기 최종 성적을 5점 감점된 80점으로 산출하는 등 【붙임3】 "◘◘과 교수 Y 담당 교과목 필기시험 평가 부당 현황(객관식)"과 같이 2020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1학기까지 위 'ㅏ학' 등 3개 과목 6개 객관식(4지 선다형) 문제에서 4명에 대하여 정답을 오답으로,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하여 최종 성적을 최소 2점에서 최대 10점까지 잘못 평가한 사실이 있음 ※ ◘◘과 Y 교수 주관식 시험 채점방법 : '○' 만점, '△'와 '✓', ' / '는 일부 감점 또는 전부 감점 **【임의 구술평가】**……② - 구미대학교 ■■과 조교수 S은 2021. 12. 3. 2021학년도 2학기 ■■과 야간반 "ㄱㄱ" 과목 기말시험을 실시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추가시험 신청을 받아야 함에도,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해당 시험에 결시한 학생 2명에 대하여, 2021. 12. 중순 경 임의로 유선전화를 통한 구술평가를 각각 실시하고, 위 BK, BL 학생의 기말시험 서면 답안지에 답안을 위 S가 임의로 각각 작성하고 채점(28점, 34점 / 40점 만점)한 사실이 있음	

【붙임1】

■■과 조교수 S 담당 교과목 필기시험 평가 부당 현황

"생 략"

【붙임 2】

◎◎과 교수 Y 담당 교과목 필기시험 평가 부당 현황(주관식)

"생 략"

【붙임 3】

◙◙과 Y 교수 객관식 필기시험 평가 부당 현황(객관식)

"생 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5	**보강 미실시 및 초과강의료 지급 부적정**	
	○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교과의 이수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구미대학교 학사업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8조에는 강의담당교원은 임의로 휴강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휴강을 해야할 경우 휴강 1주 전까지 휴보강 전산 시스템에 휴강과 보강계획을 신청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유로 휴강하는 경우에는 ㄱㄴ 우선 통보 후 보강계획을 신청하여야 하고, 학기 중에 출장을 계획하는 전임교원은 우선 휴보강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미대학교 교원의 강의시수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에 따르면 초과 강사료 지급시간 산정은 주당 강의시간 수에서 주당 책임시간을 감한 시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구미대학교 ⊠⊠과 부교수 BI은 2020.10.22.(수) ‘ㅇㅇ 협약체결을 위한 협조회의 참석(출장지:대전, 11:20~14:30)’ 출장을 사유로 2020학년도 2학기에 담당한 교과목 수업을 휴·보강 승인 절차에 따른 승인 없이 결강(2시간) 하고 결강된 수업시간을 보강하지 아니하는 등, 【붙임1】 “결강 과목 보강 미실시 현황”과 같이 위 BI등 교원 38명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까지 출장 및 특별휴가 등으로 결강한 79개 과목(중복포함), 합계 216시간에 대해 보강계획을 신청하지 않는 등 휴·보강 승인절차에 따른 승인 없이 결강한 사실이 있고,	ㅇ **기관경고** ㅇ **통보** - 강의담당교원이 출장 및 특별휴가 등으로 휴강 시 규정에 맞게 보강을 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기 바람 ㅇ **시정** - 부적정하게 지급된 강의료 856,000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 특히, 위 BI은 2020학년도 2학기 미보강한 2시간에 대한 초과강사료 16천원을 지급받는 등【붙임2】“초과강사료 부당 수령 현황”과 같이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위 BI등 교원 20명은 보강하지 않은 87시간에 대한 초과강사료 합계 856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붙임1】

결강 과목 보강 未실시 현황

"생 략"

【붙임2】

초과강의수당 수령 부적정 현황

"생 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6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미준수**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는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미대학교 학칙」 제25조의4에는 교원의 책임강의 시간은 보직 및 직위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미대학교 교원의 강의시수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3~1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도, * 단장 및 처장 3시간, 팀장/원장 6시간, 학부·학과장/부속기관장 9~12시간, 일반 평교수 12~15시간 - 구미대학교는 2021학년도 1학기 강의시간을 배정 하면서 ◎◎과 조교수 AL에게 주당 강의책임시간(주당 15시간)에 미달하는 9시간만 배정하는 등 【붙임】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미달 현황"과 같이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위 AL 등 전임교원 71명에게 주당 책임시간에 비해 적게는 주당 1시간에서 많게는 주당 13시간까지 미달되게 강의시간을 배정한 사실이 있음	ㅇ **기관주의** ㅇ **통보** - 법령 및 학칙에 명시된 교원의 교수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

【붙임】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미달 현황

"생 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7	**장학금 지급 부적정** ○ 「구미대학교 장학금 지급세칙」 제12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학사경고 대상자*는 사유가 발생한 학기 이내에는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근로, 공로, 포상, 대가성 장학금 및 등록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성격의 생활비지원 용도의 장학금 외에는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매학기 평균 65점 미만, 매학기 수강신청 대비 취득학점이 50% 미만 **【성적 기준 미충족자 장학금 지급】** ……① - 구미대학교는 교내 장학금 지급 시 2019학년도 1학기에 직전 학기 성적이 학사경고(65점 미만)에 해당하는 51점(100점 만점)인 ☝☝부 BO(학번 -------)가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라는 사유로 신청한 성실장학금 200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1】 "학사경고 대상자 장학금 신청·지급 현황"과 같이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위 BO 등 직전 학기 성적이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학생 총 13명이 신청한 장학금 합계 3,39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등록금 초과 장학금 지급】** ……② - 구미대학교는 교내 장학금 지급 시 2019학년도 1학기 ☎☎학부 BM(학번-------) 학생에게 '면학장학금'과 '글로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등록금(2,750천원)보다 160천원이 초과된 장학금 2,910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2】 "등록금 초과 장학금 지급 현황"과 같이 2019학년도 1학기 위 BM 등 학생 3명에게 등록금 합계액(8,300천원) 대비 370천원이 초과된 장학금 합계 8,67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①,② 관련】** **○ 경고(2명)** **○ 통보** - 규정을 위반하여 교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붙임1】

학사경고 대상자 장학금 신청·지급 현황

"생 략"

【붙임2】

등록금 초과 장학금 지급 현황

"생 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8	**현장실습 상해보험 미가입** ○ 「고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17-115호, 2017.3.1.)」 제15조 및 제16조, 「교육부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2017)」에 따르면 대학 또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실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도(담당)교수 등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여야 하고, 대학에서는 현장실습기간 중 실제 운영형태 및 여건과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습수행 태도 및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구미대학교 현장실습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센터 및 학과에서는 실습학기제 운영 중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로 하여금 운영계획서에 따른 현장실습의 실시여부, 의견 및 조치 필요사항 등을 포함하여 현장실습 수행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ㅇ **기관주의**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현장실습생 상해보험 등 미가입 및 지연가입】 - 구미대학교는 2019학년도 2학기에 ♬♬전공 BP학생(학번 -------)이 2019. 9. 2.부터 2019. 12. 13.까지 현장실습(실습기관: ㅁㅁ)에 참여함에도 위 학생에 대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는 등 【붙임】“현장실습생 상해보험 등 未가입 및 지연가입 현황”과 같이 2019학년도 2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까지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58명에 대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실습 시작일로부터 14일 지연하여 가입한 사실이 있음	

【붙임】

현장실습생 상해보험 등 미가입 및 지연가입 현황

"생 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9	**산업체 현장실습 평가서 분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 및 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2015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15 국가기록원, '18 교육부)를 참고하도록 하고, 동 가이드에서는 시험관리 문서의 경우 '성적처리와 관련된 기록으로 향후 업무 참고상 10년 보존'으로 되어 있으며, 중간·기말시험의 성적산출 등 단과대학의 시험관리에 관한 업무는 5년 보존으로 되어 있고, 「구미대학교 현장실습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8조에 따르면,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학점인정을 위해 실습기관 담당자는 평가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업로드 또는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부(과)에서는 학점 부여 완료 후 원본을 ⁂⁂센터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도, - 구미대학교 ⁂⁂센터는 2019학년도 하계방학 기간(실습기간 2019. 7. 1.~2019. 7. 26.) ◆◆과 AF(학번 -------) 학생의 현장실습 과목(인정학점 3)의 '산업체 현장실습 평가서'를 분실하는 등 【붙임】 "산업체 현장실습 평가서 분실 현황"과 같이 2019학년도 하계방학부터 2021학년도 하계방학까지 위 AF 등 28명의 '산업체 현장실습 평가서'를 분실한 사실이 있음	○ **경고(2명)** ○ **통보** - 산업체 현장실습 평가서가 분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붙임】

산업체 현장실습 평가서 분실 현황

" 생 략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0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구미대학교 계약사무처리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을 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사유 및 근거, 변경내역(이하 '설계변경 사유서')을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계약변경을 의뢰하여야 하고,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으로서 공정관리 및 구조적 결함,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설계변경 사항의 우선 작업을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 구미대학교는 2021. 9. 13. ◑◑(주)(대표 AG)와 계약한 'ㄴ공사(계약금액 376,337천원, 공사기간 '21. 9. 13.~'21. 12. 3.)'를 진행하면서 임상치위생실습실 중간테이블 설치 등의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 사항의 우선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설계변경 작업지시서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구두로만 지시하는 등 【붙임】 "시설공사 설계변경 지시 부적정 현황"과 같이 위 공사 등 총 2건의 공사를 2021. 9. 부터 2022. 2.까지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변경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설계변경 작업지시서 없이 구두로 우선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	○ **주의(2명)**

【붙임】

시설공사 설계변경 지시 부적정 현황

" 생 략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1	**시설공사 경쟁입찰 공고기간 미준수** ○ 「구미대학교 계약사무처리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 및 제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개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7일전에 하여야 하고,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가산하여 7일전에 입찰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구미대학교는 2019. 7. 22. 'ㄷ공사(예정가격 200,000천원)'를 입찰 공고하면서 현장설명 참여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음에도, 현장설명일(2019. 7. 24.) 전일부터 가산하여 1일 전에 공고하는 등 【붙임】 "시설공사 입찰공고기한 미준수 현황"과 같이 위 공사 등 총 16건 공사를 2019. 7.부터 2022. 1.까지 입찰 공고하면서,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가산하여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5일 전에 입찰 공고한 사실이 있음.	○ **경고(2명)**

【붙임】

시설공사 입찰공고기한 미준수 현황

" 생 략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2	**건설업 면허 미등록업체 시설공사 계약체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공사예정금액이 50,000천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5,000천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구미대학교는 2021. 3. 17. 공사금액이 17,688천원인 'ㄹ공사(공사기간 '21. 3. 22.~'21. 4. 14.)'를 계약하면서 건설업 면허 미등록업체인 ◓◓(대표 AH)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건설업 면허 미등록업체 공사 계약 현황"과 같이 위 공사 등 총 3건의 공사를 2021. 3.부터 2022. 2.까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경고(2명)**

【붙임】

건설업 면허 미등록업체 공사 계약 현황

" 생 략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3	**시설공사 입찰 관련 서류 미작성**	
	○ 「구미대학교 계약사무처리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설계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 구미대학교는 2020. 12. 4. ‘ㅁ공사(예정가격 49,598천원)’를 입찰 공고하면서 공사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설계도면 및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입찰 공고하는 등 【붙임】 “시설공사 입찰 관련 서류 미작성 현황”과 같이 위 공사 등 총 6건의 공사를 2020. 12.부터 2022. 1.까지 입찰 공고하면서 입찰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입찰 공고 한 사실이 있음	○ **경고(2명)**

【붙임】

시설공사 입찰 관련 서류 미작성 현황

" 생 략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4	**물품관리 부적정 등**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9조, 제50조 제4항, 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물품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법인의 이사장은 그 법인 사업체의 관리자와 학교의 장으로부터 매월 말 현재의 수입·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받아 재산과 재무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미대학교 물품관리규정」 제13조 제3호, 제14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1항 및 「구미대학교 실험실습기자재 관리규정」 제8조에 따르면 물품의 사용관리자는 사용 중인 물품에 대한 수량, 상태, 위치 등을 항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물품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품을 대여 목적으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반출허가서를 발급하되 반출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 임의 반출로 간주하여 즉시 원상 복귀하여야 하고, 사용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물품을 손·망실했을 경우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 관리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재물조사 부적정에 관한 사항】 ---- ①** - 구미대학교는 2019. 12. 23.부터 2020. 2. 28.까지 2019학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품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2014. 3. 1.부터 구입한	**[①,②관련]** **○ 기관경고** **○ 통보** -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물품반출 시 반출대장을 기록하는 등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③관련]** **○ 경고(4명)** **○ 통보** - 분실물품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변상 등 적절한 조치를 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물품 현황에 대해서만 존재여부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 2019학년도 결산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기계기구(소계 48,118,635천원), 집기비품(소계 8,120,344천원) 등 자산금액 합계 56,238,979천원의 유형 고정자산에 대한 도난, 망실, 파손, 불용처리 및 재고 여부를 파악하지 않는 등【붙임1】 "재물조사 부적정 실시현황"과 같이 2019. 12.부터 2022. 2.까지 2019학년도 및 2021학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품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전차 정기 재물조사가 완료된 이후 새롭게 구입한 물품 현황에 대해서만 존재여부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 2019학년도 및 2021학년도 결산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등 자산금액 합계의 유형 고정자산에 대한 도난, 망실, 파손, 불용처리 및 재고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물품 미허가 반출에 관한 사항】---- ②** - 구미대학교 ■■과 교수 AI는 2017. 3. 31. 취득한 노트북을 미상일에 반출허가서를 발급하지 않고 ■■과 학생 미상자에게 대여한 후 원상 복귀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22. 3. 28.이 되어서야 학내 ◘◘ 창고에서 해당 물품을 찾는 등 【붙임2】 "물품 미허가 대여 현황"과 같이 위 ■■과 교수 AI 등 물품사용 책임자 3명은 미상일부터 2022. 3. 감사일 현재까지 위 '노트북' 총 26점(취득가액 합계 23,415천원)을 미상일에 반출허가서 발급없이 ■■과 등 3개 부서 학생 및 직원들에게 대여한 후 원상 복귀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22. 3. 28.이 되어서야 학내 ◘◘ 창고 등 보관 장소에서 해당 물품을 찾은 사실이 있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물품 망실에 관한 사항】 ---- ③ - 구미대학교 ○○과 물품사용관리자 부교수 P는 2007. 12. 20. 취득한 '골프채(세트)'를 미상일에 망실하였음에도 물품관리부서에 경위서를 작성·제출하지 않는 등 【붙임3】 "물품 망실 현황"과 같이 위 ○○과 물품사용관리자 부교수 P 등 4명은 미상일에 위 '골프채' 등 총 25점(취득가액 합계 31,968천원)을 망실하였음에도 물품관리부서에 경위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붙임1】

재물조사 부적정 실시 현황

" 생 략 "

【붙임2】

물품 미허가 대여 현황

"생 략"

【붙임3】

물품 망실 현황

"생 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5	**관할청 미신고 건축물 설치**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5조 제5항 제8호에 따르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신고 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의 건축은 '건축허가' 대상 - 구미대학교는 2019. 8. 13. ■■과 실습장비 보관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ㅂ공사'를 진행하면서 관할청인 구미시장에게 신고없이 컨테이너 박스(3m×6m)형의 건축물 2동(면적 합계 36㎡)을 설치하는 등【붙임】 "관할청 미협의 건축물 설치현황"과 같이 위 건축물 등 총 7개동(연면적 합계 123㎡)을 2019. 8.부터 2022. 2.까지 구미시장에게 신고없이 설치한 사실이 있음	○ **기관경고** ○ **통보** -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가설건축물 7개동을 법령 등 규정에 맞게 조치하기 바람

【붙임】

관할청 미협의 건축물 설치현황

"생 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6	**시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사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해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2019.6.)」에 따르면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의 회수, 삭감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대학은 자체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재단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구미대학교 계약사무처리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르면 공사 및 용역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감독조서 등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구미대학교는 2019. 5. 31. ▼▼(주)(대표:AK)로부터 'ㄸ공사(계약금액 89,100천원, 공사기간 '19. 5. 14. ~ '19. 5. 31.)'의 계약이행 완료 사실을 통지 받았음에도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준공처리하는 등【붙임1】"시설공사	○ **경고(2명)** ○ **시정** -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은 공사비 합계 20,419천원을 시공업체(5곳)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준공검사 미시행 현황”과 같이 위 공사 등 총 16건(계약금액 합계 3,767,816천원)의 공사를 2019. 5.부터 2022. 2.까지 준공처리하면서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구미대학교는 2020. 1. 29. ㈜▣▣(대표 AJ)과 계약한 ‘ㅅ공사(◈◈,◎◎,目目)(계약금액 21,670천원, 공사기간 ‘20. 2. 1.~’20. 2. 11.)‘를 2020. 2. 11. 준공처리하면서 계약내용의 조명기구 일부(소방감지기 3개, LED 다운라이트 20개 등)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감액·정산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등 【붙임2】“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과 같이 위 공사 등 총 5건의 공사를 2020. 2.부터 2022. 2.까지 준공처리하면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조명기구, 경량철골천장틀 등이 시공되지 않았는데도 시정조치 하거나 감액하지 않고 미시공된 공사비 20,419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붙임1】

시설공사 준공검사 미시행 현황

" 생 략 "

【붙임2】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

" 생 략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구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7	**시설공사 법정경비 미정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인이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2019.6.)」에 따르면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의 회수, 삭감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대학은 자체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재단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경고(2명)** ○ **시정** - 감액·정산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등 합계 16,355천원을 시공업체(5개)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람.
	- 구미대학교는 2019. 10. 30. ▼▼㈜(대표 AK)와 계약한 'ㄱㄱ공사(계약금액 418,700천원, 공사기간 '19. 10. 30. ~ '19. 12. 13.)'를 준공처리하면서 미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33천원을 감액·정산하지 않는 등 【붙임】 "시설공사 법정경비 미정산 현황"과 같이 위 공사 등 총 7건 공사를 2019. 12.부터 2022. 2.까지 준공처리하면서 미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합계 16,355천원을 감액·정산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특히, 구미대학교는 위 시설공사 중 ▼▼(주)(대표 AK)와 2019. 10. 30. 계약한 'ㅈ공사(계약금액 91,300천원, 공사기간 '19. 11. 01. ~ '19. 11. 08.)'와 2020. 2. 18. 계약한 'ㅊ공사(계약금액 66,500천원, 공사기간 '20. 02. 19. ~ '20. 02. 28.)'의 준공서류를 검토하면서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2,967천원의 사용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이 국세청 조회결과 확인되지 않는데도 감액하지 않고 준공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붙임】

시설공사 법정경비 미정산 현황

" 생 략 "

현지조치 사항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조치할 사항
【입시·학사】		
1. 현장실습 현장지도 미실시	○교수 11명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까지 현장실습생 182명에 대하여 실습운영형태, 실습수행태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현장실습 지도교수 방문(지도)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음 **「고등교육법」 제22조 제1항 및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2017.3.1.)」 제15조 및 제16조, 「교육부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2017)」】**	**【구미대학교】** **○ 통보** -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교육원 교육과정을 철저히 운영하기 바람
2. 평생교육원 신규 과정 개설 미보고 등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 개설 미보고 현황"과 같이 2019학년도 봄학기부터 2021학년도 가을학기까지 위 '▦▦' 등 11개 과정을 신규 개설하면서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19학년도 봄학기부터 2021학년도 가을학기까지 위 '★★' 등 8개 과정은 신규 개설하면서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고,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운영 **【「평생교육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 철저(평생학습정책과-422, 2017.01.18.)」, 「구미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규칙」 제6조 및 제8조】**	**【구미대학교】** **○ 통보** - 신규 개설 시 관할청 보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 등 준수하여 운영하기 바람